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11호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현행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인 시설에 대하여 입지를 허용토록 제한하여,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간접규제를 통해 지역내 영세상인 보호와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별표4, 별표5의 내용을 개정함
(별표3 제4호, 별표4 제3호, 별표5 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juntae0819@korea.kr
-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 3) 팩 스: 054-535-985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